

#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2월 25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2월 2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9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11년 3월 9일) 상정 원안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민원여권과장 김원현)

### □ 제안이유

- “365언제나 부천시 민원센터” 운영에 따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한편,
- 법 문장 표기상 나타난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가. 제명 “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설치 운영 조례”를 “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” 로 함.

나.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을 변경함(안 제7조제1항).

1) 행정종합정보센터: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

2) 민원센터: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, 평일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없	음

### 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설치 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설치 운영 조례”를 “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부천시 시민봉사실”을 “부천시민원센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부천시시민봉사실(이하 “시민봉사실”이라 한다)”를 “부천시민원센터(이하 “민원센터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2. 민원센터

가. 버스터미널, 전철역 등 시민이 이용하기 쉬운 장소

나. 그 밖에 민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장소

제3조제3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시민봉사실)”을 “(민원센터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시민봉사실에는 근무자를”을 “민원센터에는 상담위원을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와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민봉사실”을 각각 “민원센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근무자를”을 “상담위원을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상담위원의 위촉)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센터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행정상담, 고충민원상담, 취업정보상담: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
2. 법률상담: 변호사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
3. 소비자보호상담: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
② 제4조제1항에 따른 민원센터 상담위원은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상담위원 및 시민봉사실 근무자”를 “상담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상담위원 및 시민봉사실 근무자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”을 “상담위원이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”으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근무시간) ①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보센터 상담위원: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
2. 민원센터 상담위원: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, 평일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

② 민원센터 상담위원은 오전, 오후를 모두 근무하여야 한다. 다만, 2명이 근무할 경우에는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
2.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상담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

4. 그 밖에 상담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 
제9조 중 “상담위원 및 시민봉사실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”를  
“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  
제10조 중 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행정종합정보센터 상담일지를 시민  
봉사실 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민봉사실 운영일지를 각각”을  
“별지 서식의 행정종합 상담일지를 ”로 한다.  
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,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 
삭제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